

제3063호
2024. 2. 19.

발행인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편집인 : 홍보담당관 유진영
전화 :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자치법규

선	기관 의 장
람	

구 보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24-186호 :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2
- 공 고
제2024-182호 : 공시송달공고 10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186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회관의 시설 등 중구민 우선 이용 규정 추가(안 제11조제1항)

- 중구 주민등록자 자치회관 시설 등 우선 이용 내용 추가

나. 주민자치위원 재위촉 금지 내용 추가(안 제20조의2)

- 주민자치위원 해촉 이후 1~2년 내 재위촉 금지 규정 추가

다.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운영규정 신설(안 제24조~제29조)

-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 직무,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신설함으로써 제도적 근거 마련

라. 자치회관 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기준 개정(별표)

- 자치회관 시설 사용료를 면적에 따라 10,000원~30,000원으로 세분화
- 감면대상은 중구 주민등록자로 1인2강좌로 한정
- 다등이카드 소지자, 중구 토박이 감면대상에 추가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할인가간 만료에 따른 감면규정 삭제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	--	--	--	--	--	--	--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자치행정과, 전화 : 02-3396-4566, 팩스 : 02-3396-8613, email : bk79@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청장은 중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을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재위촉 금지) 제2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은 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으며, 제20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제4장(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제24조(설치) 자치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협조·지원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25조(기능) 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상호 정보교환 및 지원
2.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정책 수립, 연구, 개발
3. 중구 주민자치 관련 행사의 주관
4. 주민자치 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
5. 그 밖에 자치회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협의
 - ② 협의회는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 또는 동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26조(구성 등) ① 협의회의 위원은 제17조에 따른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2명을 두고,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고문은 3명 이내로 하되, 협의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주민자치 발전에 관심과 지식,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협의회의 추천 및 동의로서 추대한다.

제27조(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28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회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9조(운영경비 등) 구청장은 협의회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 사업비, 회의 참석에 따른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를 제30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협의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협의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별표】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기준

□ 사용료 등 징수기준(제10조제3항 관련)

구 분	단 위	대 상	상한 금액
사용료	1시간	50㎡미만	10,000원
		50㎡이상~100㎡미만	15,000원
		100㎡이상~150㎡미만	20,000원
		150㎡이상~200㎡미만	25,000원
		200㎡이상	30,000원
수강료	월	프로그램 이용자 (레크리에이션, 생활체육, 일반강좌)	30,000원

※ 사용료 징수기준은 최초 1시간으로 하고 1시간 초과 시마다 50%를 가산한다.

※ 수강료 환불은 프로그램 개시 전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나 프로그램 개시 후에는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 사용료, 수강료 감면기준(제10조제5항 관련)

구 분	감면 비율	대 상	비 고
사용료	100	· 국가·공공 및 직능단체 등에서 공익을 위하여 주관하는 행사	
	50	· 65세 이상 노인 또는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수강료	10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중구 주민등록자 감면적용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소년·소녀가정 포함)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모·부자 가정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 · 다둥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 제출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막내 자녀 나이 18세까지) · 서울 중구 토박이	

※ 수강료 감면은 중구 통합 1인 2강좌로 제한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이용 등) ①주민은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1조(이용 등) ①----- --. 다만, 구청장은 중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을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2(재위촉 금지) 제2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은 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으며, 제20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신 설>	제4장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신 설>	제24조(설치) 자치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협조·지원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신 설>	제25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상호 정보교환 및 지원 2.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정책 수립, 연구, 개발 3. 중구 주민자치 관련 행사의 주관 4. 주민자치 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 5. 그 밖에 자치회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협의 ② 협의회는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 또는 동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신 설>	제26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제17조에 따른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2명을 두고,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고문은 3명 이내로 하되, 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고 주민자치 발전에 관심과 지식,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협의회 추천 및 동의로서 추대한다.
<신 설>	제27조(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신 설>	제28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회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신 설>	제29조(운영경비 등)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 사염비, 회의 참석에 따른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생략)	제30조 (현행 제24조와 같음)

【별표】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기준

□ 사용료 등 징수기준(제10조제3항 관련)

구분	단위	대상	상한금액
사용료	1시간	다목적회의실, 사랑방 등	10,000원

※ 사용료 징수기준은 최초 1시간으로 하고 1시간 초과 시마다 50%를 가산한다.

※ 수강료 환불은 프로그램 개시 전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나 프로그램 개시 후에는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제10조제5항 관련)

구분	감면비율	대상	비고
사용료	100	· 국가·공공 및 직능단체 등에서 공익을 위하여 주관하는 행사	
	50	· 65세 이상 노인 또는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사용료 및 수강료	100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저소득 모·부자가정 · 소년·소녀가장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등록된 장애인 · 경로우대자(65세이상)	
	10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기업부담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 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사용료 및 수강료를 결제하는 자	삭제

【별표】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기준

□ 사용료 등 징수기준(제10조제3항 관련)

구분	단위	대상	상한금액
사용료	1시간	50㎡미만	10,000원
		50㎡이상~100㎡미만	15,000원
		100㎡이상~150㎡미만	20,000원
		150㎡이상~200㎡미만	25,000원
		200㎡이상	30,000원

※ 사용료 징수기준은 최초 1시간으로 하고 1시간 초과 시마다 50%를 가산한다.

※ 수강료 환불은 프로그램 개시 전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나 프로그램 개시 후에는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제10조제5항 관련)

구분	감면비율	대상	비고
사용료	100	· 국가·공공 및 직능단체 등에서 공익을 위하여 주관하는 행사	
	50	· 65세 이상 노인 또는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수강료	10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소년·소녀가정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모·부자 가정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 · 다둥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 제출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만내 자녀 나이 18세까지) · 서울 중구 토박이	중구 주민 등록자 감면 적용

※수강료 감면은 중구 통합 1인당 2강좌로 제한함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18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83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2. 15.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건 명: 「감염병 예방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공시송달
2. 위반법규: 「감염병 예방법」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항 2의4
3. 근거법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공시송달), 「지방세기본법」제33조
4. 공시송달 대상: 정*식
5. 공고기간: 2024. 2. 15. ~ 2. 29.(14일)
6. 게시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중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7. 의견제출

제출처	의견제출기한	2024. 2. 29.(목) 까지		
	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보건소 감염병관리과	담당자	강 병 옥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9길 16, 5층	전화번호	(02) 3396-5263
	전자우편	rkd1224@junggu.seoul.kr	전송(FAX)	(02) 3396-8905

7. 유의사항

가.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서울특별시 중구보건소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 납부 아니할 경우 질서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증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60개월 한도)하여 부과합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재산압류) 및 각종 관허사업에 대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보건소(☎ 02-3396-526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공시송달 대상

연번	성명	주소	반송사유
1	정 * 식	서울특별시 통일로 92길 3*-* *층	폐문부재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종질지(80g/m²)]